
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문대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76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30.

발 의 자 : 문대림 · 윤준병 · 김한규
이병진 · 김승원 · 김동아
임미애 · 이기현 · 최민희
부승찬 · 정춘생 · 신정훈
김재원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는 소음대책 지역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시·군·구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되고 있음. 시·군·구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 주민지원사업비로 보수, 보강 사업을 하거나 비품 등 자산 취득이 가능한데 비하여, 마을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, 마을 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비를 통한 지원이 어려워 주민지원사업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수요와 괴리된 채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·관리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소음 피해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).

공향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향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5항 단서 중 “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”로, “시행할”을 “시행하거나 법인·단체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고,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공모방식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(시설물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)
2.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복지사업 중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·관리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를 위한 사업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제19조제1항제1호 중 “공동이용시설(도서관, 체육공원 등)”을 “도서관, 체육공원 등 공동이용시설(주민이 공동으로 소유·관리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)의”로 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8조(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④ (생략)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교육감(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)이 시행한다. 다만, <u>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.</u>	제18조(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----- ----- <u>시행</u> <u>하거나 법인·단체로 하여금</u> <u>시행하게 할 수 있고, 이에 필</u> <u>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</u> <u>보조할</u> -----. 1.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공모방식을 통해 <u>시행하는 사업(시설물의 설치 사업은 제외한다)</u> 2.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복지사업 중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·관리하고 있는 <u>공동이용시설의 관리를 위한 사업</u>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<신설>	
<신설>	
<신설>	

⑥ · ⑦ (생략) 제19조(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)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주민복지사업: <u>공동이용시설</u> (도서관, 체육공원 등) 설치,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. 2. 3. (생략) ② · ③ (생략)	<u>는 사업</u> ⑥ · ⑦ (현행과 같음) 제19조(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) ① ----- -----. 1. -----<u>도서관, 체육공원 등 공동이용시설(주민이 공동으로 소유·관리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)</u>의----- ----- -----. 2. 3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